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소장, 참가신청서, 재심소장,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(법률 제19353호, 2023. 4. 18. 공포, 10. 19. 시행) 및 「민사소송법」(법률 제19354호, 2023. 4. 18. 공포, 10. 19. 시행)이 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접수 보류된 문서에 관하여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접수된 문서와 동일하게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12조제3항)
- 소장등을 접수 보류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필요한 “접수보류인,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”을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비품 목록에 추가함(안 제14조제1항제8호)
- 당직근무일지(재택당직근무 포함) 서식 중 문서처리상황란에 “접

수보류”란을 신설함(안 별지 제2호 서식)

4.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접수된”을 “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8호 중 “문서접수인(고무인)”을 “문서접수인(고무인), 접수보류인,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 별지 1 양식의 고무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| 청사 내 외 순찰 점사항(공통) | | | 재택근무 전환 시 점검사항 등(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(1)순찰시간 | (2)발견사실 및처리개요 | (3)순찰자 | (7)점검사항 | (8)점검시간 | (9)이상유무 | (10)확인자 |
| 시분부터 시분까지 | | (인) | ①청사내보안점검 및 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| 시 분 | | |
| | | | ②당직실전화의착신통화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 | 시 분 | | |
| | | | ③당직용이동전화기의 작동 여 부 확인 | 시 분 | | |
| 시분부터 시분까지 | | (인) | ④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작동 여부 확인 | 시 분 | | |
| | | | ⑤야간문서투입함의 이상유무 및 야간표시등 작동여부 확인 | 시 분 | | |
| | | | ⑥청사내 최종퇴청예정자 성명 및 인계사항 등 | (11)성명 | (12)인계사항 | (13)인계시간 시 분 |
| (4)연락사항 | (5)연락기관 | (6)수화자 소속·직명 | ⑦기타 사항 | (무인전자경비장치 출입시간 내역표 첨부) | | |
| | | | | | | |
| (14) 비고 | | | | | |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| |
| 연 락 처 | (02) 3480-1578 |